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김선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299
----------	-------

발의연월일 : 2025. 8. 21.

발 의 자 : 김선민 · 서왕진 · 신장식
박은정 · 백선희 · 김준형
황운하 · 최혁진 · 이해민
차규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외국인이 보험료를 체납하면 내국인의 경우와는 달리 단 1회의 체납만으로 일률적으로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급여제한의 예외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2023. 9. 26. 2019헌마1165)을 내린 바 있음.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법」이 국내체류 외국인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험급여 제한의 예외를 둘 수 있도록 개정(법률 제20505호, 2024. 10. 22. 일부개정)되었으나,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이러한 개정 사항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이에 장기요양보험료 체납자에 대한 장기요양급여 제한에 대하여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 규정도 준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0조).

법률 제 호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 전단 중 “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을 “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제1항제4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6항까지, <u>제54조 및 제109조제10항</u> 은 이 법에 따른 보험료 체납자 등에 대한 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및 장기요양급여의 정지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가입자”는 “장기요양보험가입자”로, “보험급여”는 “장기요양급여”로 본다.	제30조(장기요양급여의 제한 등에 관한 준용) ----- ----- ----- <u>제54조, 제109조제10항 및 제11항</u> ----- ----- ----- ----- ----- ----- ----- -----.